

한국정책방송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한국정책방송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6월 15일
한국정책방송원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방송무대서기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 ~ '27.12.31.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영상부(세종시)

※ 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될 경우에 한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영상촬영	방송무대서기 (일반임기제)	○ 정부 부처 뉴스 등 각종 프로그램 촬영 및 송출 ○ MNG(경량중계시스템) 운용 및 드론 촬영 ○ 대통령 행사 등 중계 및 스튜디오 프로그램 녹화 ○ 장비 관리 및 촬영 데이터 관리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7.13.)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영상촬영	경력	①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③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졸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관련분야: 정부/공공기관, 지자체, 방송관련 기관(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TV, 온라인 미디어 등)에서 영상촬영 또는 영상취재 관련 업무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 제외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 경력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 예) 경력1√ / 경력2 / 경력3
 -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7.13.)** 기준으로 판단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경력의 범위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경력' 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다. 우대요건 및 가산점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026.6.25.) 기준]

채용분야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
영상촬영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2.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전문학사 이상, 등급별 차등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영상/미디어/홍보 등* 단,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는 제외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산업인력공단/유무에 따른 우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드론) 자격증(한국교통안전공단/종별 차등 우대)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아래 고려사항 참고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026.6.25.)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우대요건 관련

-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합산 가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시험령 제27조제4항)
-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많은 경력)

- **[학위]**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전문학사 이상, 등급별 차등 우대)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는 제외
- ※ 관련학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 등급별 차등 배점하며 복수 제출 시 가장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 박사 및 석사의 경우, 수료는 불인정

- **[자격증]**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산업인력공단/유무에 따라 우대)
-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드론) 자격증(한국교통안전공단/종별 차등 우대)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 각각 인정되나, 초경량 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을 복수 제출 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 ※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대상

[경력'요건 응시자 참고사항]

○ 경력기준 요건별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음

구분	채용자격요건(경력기준)	자격요건	우대요건
방송무대서기 (일반임기제)	경력2.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공무원경력만 인정	자격요건 충족 이후 민간·공무원 경력 합산 인정
	경력1.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민간경력만 인정 (공무직·기간제 등 포함)	
	경력3.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졸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우대요건은 '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위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 지원자가 4명 이상 15명 이하인 경우 : 3배수 선발
 - 지원자가 16명 이상인 경우 : 4배수 선발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미만인 때에는 형식심사(소극적 서류전형) 진행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전문지식
※ 평가요소 "⑤전문지식" 관련하여 "실기" 평가 포함(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공지)

【카메라 운용능력 등 평가】

- 영상촬영 : 면접 당일 오전, 자유주제 또는 제시된 주제로 카메라 촬영
(카메라 운용능력, 영상표현 능력 평가)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6.15.(월) ~ 6.25.(목)	'26.6.23.(화) ~ 6.25.(목)	'26.7.7.(화)	'26.7.13.(월)	'26.7.29.(수)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한국정책방송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바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6. 23.(화) 09:00 ~ 6. 25.(목) 18:00
 ※ 취소 가능 기간: 2026. 6.25.(목) 09:00 ~ 6.28.(일)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안 내 사 항 》

○ 응시 수수료

구분	금액	계급(직급)
	5,000원	방송무대서기(일반임기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반환
 * 단,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해야 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증빙자료(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서접수 취소 기간까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마이페이지-응시현황-제출서류 메뉴)에 등록하면 응시수수료는 반환됨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

○ 접수 기간에는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최종 제출을 완료하거나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는 붙임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귀속
- 응시표 출력(응시번호 확인) : 2026. 6. 30.(화), 09:00부터 응시표 출력가능
- 응시표 출력방법: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인터넷 접수시 작성
	이력서 1부	별지 서식 제1호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서식 제2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별지 서식 제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제5호
	경력(재직) 증명서(응시자격요건 관련) 1부	발급 시 채용분야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상세직무 표기 하여 발급
경력(재직) 증명서(우대요건 관련)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 서식 제6호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증빙자료) 사본 각 1부	

다. 유의사항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출원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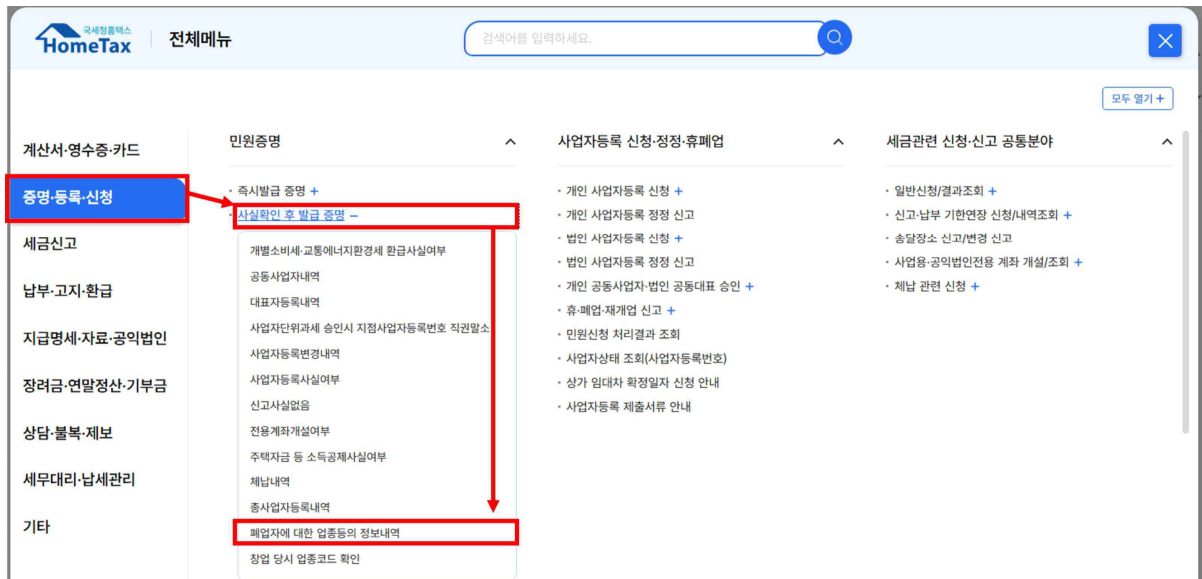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7. 29. ~ 8. 12.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 8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임용일 ~ '27.12.31.까지(정원의 존속기간이 연장될 경우에 한해,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6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방송무대서기(일반임기제)	58,820	26,945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지원부(044-204-8373)로 문의 바랍니다.
- * 응시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 심사 관련 사항은 문의 제외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영상촬영	방송무대서기(일반임기제)	1명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영상부(세종시)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부처 뉴스 등 각종 프로그램 촬영 및 송출 ○ MNG(경량중계시스템) 운용 및 드론 촬영 ○ 대통령 행사 등 중계 및 스튜디오 프로그램 녹화 ○ 장비 관리 및 촬영 데이터 관리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전문성, 대인관계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취재(ENG, 고화질카메라, 드론, 수중촬영) 각종 방송제작 카메라 운용 ○ 스튜디오 및 중계방송 카메라 운용 ○ MNG(경량중계시스템) 관련 업무 지식 ○ SNS 등 뉴미디어 및 플랫폼 등에 대한 전문 지식 ○ 인코딩 프로그램 및 영상 코덱에 대한 이해도 		
응시 자격 요건	경력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3.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졸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p>☞ 관련 직무분야 : 정부/공공기관, 지자체, 방송관련 기관(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TV, 온라인 미디어 등)에서 영상촬영 또는 영상취재 관련 업무</p> <p>※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 제외</p>	
	우대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2. 관련분야 전공 학위(전문학사 이상 차등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언론/미디어/홍보 등 * 단,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는 제외 3. 직무분야와 관련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유무에 따른 우대/산업인력공단)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드론) 자격증(종별 차등 우대/한국교통안전공단)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은 각각 인정되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을 복수 제출 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대상 <p>※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고</p>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연번	구 분	내 용
1	(필수)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별지서식 제1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2	(필수)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3	(필수)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A4 3매 이내로 작성 (직무 관련 추진 계획, 수단, 방법 등 기술) ○ 자필 서명 필수
4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제4호)	○ 자필 서명 필수
5	(필수)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 서식 제5호)	○ 자필 서명 필수
6	(필수, 해당자)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필수서류이며, 우대요건의 경우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새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와 함께 '공고일 이후 발급된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연번	구 분	내 용
		<p><u>미첨부 시 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경력 인정</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u>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u>로 보완하여야 함 <p>*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p>
7	(해당자) 주민등록 초본 1부 (병역사항 기재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남자만 해당) 병역사항 포함된 초본을 제출하되, 미포함 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8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만 해당) 응시자격 요건의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9	(해당자)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활용할 경우 학위증 사본 제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 서식 제6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10	(해당자)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유의사항: 제출서류(PDF형식)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파일 용량은 10MB까지 가능)**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채용분야 작성
-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판단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별도 제출한 이력서의 기재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로 제출한 이력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분야 경력 요건 중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 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8년의 경력은 ‘나. 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5년의 경력은 ‘다. 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주 근무시간’의 개념은 초과(휴무)근무를 포함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표준(기본)근무 시간을 의미함

·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 ‘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별도 첨부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시간 순서대로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학위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는 불인정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전문)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자격증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 글씨크기 등은 작성자가 적절히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여러 장으로 작성)

※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격증 및 기타 우대요건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 필) 함께 첨부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휴면명조 12p 가는 글씨, 줄간격 160%로 작성)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1. 현재까지 귀하가 담당했던 업무에서의 실적을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 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3.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2026. . . 작 성 자 : (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휴면명조 12p 가는 글씨, 줄간격 160%로 작성)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1.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2.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소견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인 실천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
3.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2026. . . 작 성 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계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한국정책방송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학위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문제목<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명 :■ 영문명 :○ 심사 년월일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I. 연구목적

- 1.
 - 가.
 - 1)
 - 가)
 - (1)
 - (가)

II. 연구내용

III.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6. .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정책방송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 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